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40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임규호 의원(찬성자 1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임규호 의원)

1. 제안이유

- 예산낭비와 부실.방만 운영 및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해 온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 등을 본보기삼아, 지역 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지역축제의 계획.준비.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건전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강한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제2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다. 제18조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역축제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축제의 세부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지역축제의 부실화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타당성

- 최근 지역축제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등이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물가가 상승하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축제 전반에 공공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지역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축제 개최를 위한 정성적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방만한 축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인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표준화된 평가 지표에 따라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면 획일적인 축제가 양산 될 가능성도 있음.

다.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등)

- 개정안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에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축제 주최자 또는 기관이 판매

상품의 공정가격 준수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려는 것임.

- 축제위원회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변경, ▶자치구민간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축제평가 및 축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 축제 관련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음.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변경
2. 자치구·민간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3.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신설, 통합, 조정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
5. 음악축제의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 축제평가 및 축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8. 축제 관련 학술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축제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동안은 시 재정이 투입되는 축제라 하더라도 판매상품 가격에 대한 적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판매 업체 또는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왔음.
- 그러나 지역축제 판매상품 가격이 지나칠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쾌감을 유발하며 지역축제뿐만이 아닌 지역 이미지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축제 판매상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서울시의 및 자치구·민간의 노력을 독려하는 본 입법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로, 지자체 차원에서 특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라. 축제 평가 지표 신설(안 제18조제3항)

-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평가 지표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평가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시하는 필수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축제 평가 지표(개정안) 》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 서울시가 추진하는 축제에 대한 평가는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 직영(용역 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축제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음.

- 평가는 구체적으로 ‘종합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는데, 서울예술축제(유망축제)와 5천만원 이상 민간축제를 대상으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시·자치구 축제나 서울예술축제(대표)축제, 5천만원 이하 민간 축제의 경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가 평가의 도입 여부임.

< 축제지원센터의 2023년 축제 대상별 평가방법 >

평가구분	대상	평가방법
종합평가	서울예술축제(유망축제), 50백만원 이상 지원하는 민간축제	전문가(50%)+관람객(30%)+ 모니터링(10%)+행정평가(10%)
만족도 조사	시 주최 축제, 자치구 축제, 서울예술축제(대표축제), 50백만원 미만 지원 민간축제	관람객(60%)+모니터링(20%)+ 행정평가(20%)

- 각 평가 방법별로 개정안이 제시한 지표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평가 방법별 개정안 지표 포함 여부 >

연번	개정안 지표	전문가 평가	모니터링 평가	관람객 평가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	○	○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	○	○
4	행사장 안전 관리	○	○	○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	○	○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	○	○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	○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

-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의 지표 중 대부분은 이미 축제지원센터에서 평가하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 이 중 ‘축제 목표의 적절성’ 지표는 모니터링 평가, 관람객 평가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동 조례의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시민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표로 축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지표는 전문가·모니터링·관람객 어떤 평가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품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직 실시된 전례가 없고, 시장 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한 각 축제마다 판매상품 적정가가 다를 수 있어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의 지표 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는 야외 행사가 실내 행사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편의시설의 구비 여부는 축제 운영의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야외 행사와 실내 행사의 평가 방법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표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9개의 필수 평가 지표 중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지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드림.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4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임규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인제, 박승진,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왕정순, 이민옥,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예산낭비와 부실.방만 운영 및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해 온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 등을 본보기삼아, 지역 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지역축제의 계획.준비.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건전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강한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 나. 제16조제2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다. 제18조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신 설></u></p> <p>11. (생략)</p>	<p>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축제의 평가)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p>	<p>제18조(축제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p>

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④ (현행과 같음)

문서 번호

2023101600000010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임규호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18.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제11호 및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제2항, 제18조(축제의 평가)제3항을 변경·신설한 개정안으로 축제위원회의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나 기추진 사업(붙임 참조)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 재구성 계획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23.7.14字)에 따라 축제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I 축제위원회 현황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위원현황 : 총 16명(위원장 : 류정아 위원) ※ 붙임1 참조

○ 위촉직(13명) : 축제감독 등 축제전문가 7명, 교수 5명, 서울연구원 1명

- 임기 : '21. 7. 15. ~ '23. 7. 14.(2년) / 연임 2회 가능

○ 당연직(3명) :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 **운영실적**(‘21. 7. 15. ~ ‘23. 7. 14.)

○ 본 위원회 : 2회(’22. 2. 11, ’22. 5. 24.)

○ 실무위원회 : 1회(’21. 9. 27.)

Ⅱ **위원 재구성(안)**

□ **재구성 사유 : 위촉직 위원 임기만료**

□ **임 기 : 2023. 7. 15. ~ 2025. 7. 14.**

□ **위촉직 위원 재구성 적정여부**

○ 위원구성 다양화 : 적정(조직담당관 검토 완료)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6년초과
연임여부 해당없음

자료 : 2023년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10061 발췌